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이 영 수*
권 순 국**

-
- I. 서 론
 - II. FTA 원산지규정
 - III.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
 - IV. 위반 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
 - V. 결 론
-

주제어 : 원산지규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원산지 검증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는 그 동안 FTA 로드맵을 수립한 이래 동시다발적(multi-track approach)으로 주요국가와 FTA를 체결해오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저자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강사, 교신저자

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등 5개 협정에 16개국과 발효 중에 있으며, 미국, EU, 페루와는 타결된 상태이다. 이러한 FTA 체결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하게 되면서 체결국간 교역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특혜관세를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예컨대, 한·ASEAN FTA의 경우 수출은 2007년 387억 달러에서 2008년 49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아세안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수입금액에서 특혜관세를 받은 비율은 27%였으나, 반대로 아세안지역으로 수출된 수출금액의 경우 10%내외로 큰 차이를 보였다.

FTA 특혜관세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원산지규정(RoO: Rules of Origin)이며, 이는 크게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확인기준으로 구성된다. 원산지 결정기준과 확인기준은 FTA 당사국의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세부 기준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다수의 FTA가 체결되면서 각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일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스파게티보울 효과(spaghetti bowl effect)¹⁾를 불러오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각 FTA마다 원산지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은 물론 수출입 기업들의 업무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²⁾ 실제로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각 협정마다 달라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 바그와티(Bhagwati)가 경고한 바와 같이 복수의 FTA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상이한 관세율 및 원산지규정의 적용이 무역의 흐름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현상을 무역거래의 스파게티보울 효과라 하며 아시아지역에서는 누들보울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 부른다. Baldwin Richard,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545, NBER, 2006, p.36.;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p.7.

2)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 적용을 실질적으로 수혜 받을 수 있도록 FTA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를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사례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는 주로 관련 단행본,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였으며, 사례연구는 관세청에서 판정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원산지규정, 원산지 결정 기준 및 원산지 확인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다수의 연구들이 FTA 원산지규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

연구분야	주요 내용	연구자
원산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미국, EU, 한국 등)의 FTA 원산지규정 연구 - EU의 FTA 원산지규정 연구 -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 연구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결정기준과 확인기준 연구 -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결정기준 비교 - 전세계 주요 지역별 원산지규정 연구 	강진석(2006) 안용린(2007) 최문·이상빈(2009) 정인교 외(2005) 고용부(2006) Estevadeordal·Haris·Suominen(2007)
원산지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연구 - 한·EU FTA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실증분석 - 한·인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연구 -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연구 - 한·미 FTA 원산지기준과 경제효과 추정 -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결정기준 개선방안 	남풍우·최준호(2007) 이제현·김연숙(2007) 이제현·김기영(2008) 김연숙(2008) 조정란(2008) 박광서 외(2009)
원산지 확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실증분석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 연구 	김창봉·박주원(2010) 최준호(2008)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동일한 사유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FTA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의의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로서 물품에 대한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국제법규, 법령 및 규칙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능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기능, 보건위생 및 자연환경 보호기능,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 무역장벽 기능을 갖고 있다.³⁾

동 규정은 적용목적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FTA나 일반특혜관세제도 등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후자는 여타 무역정책상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작성 등에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⁴⁾

FTA 원산지규정은 크게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확인기준으로 구성되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실체적인 규정이며, 원산지 확인규정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실제로 증명하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절차적인 규정을 말한다.⁵⁾

3) 최홍식·류원택,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pp.11-13. ; 안병수,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JSEP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265.

4)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항.

5)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p.48.

2. 원산지 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기준의 체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어느 한 제품이 완전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등으로 대별되며,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method),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⁶⁾ 특정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또는 기술테스트방법(technical test method) 등의 기준이 이용되고 있다.

실질변형기준을 보완하거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 또는 용인기준(tolerance rule), 누적기준(cumulation rule),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등이 있다.⁷⁾

〈표 2〉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구 분	내 용
미소기준	- 미소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 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로 인정
누적기준	-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

6) 부가가치기준에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으로 수입산 함량(MC : Important Content), 국내산 함량(DC : Domestic Content), 부품가액(VP : Value of Parts) 등이 있다.

7)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에 대한 자세한 연구로는 김한성, 전계서, pp.29-36. ; 박광서 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pp.278-281. ;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2009, pp.106-226. ;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pp.232-242 등이 있다.

	<p>산재료(원산지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를 받는 국가의 범위에 따라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완전누적(full cumulation)으로 나누어짐
불인정공정/최소가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이 변경되더라도 최소가공만 일어난 경우는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최소가공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가리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또는 보관 중에 물품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 • 포장개선 또는 물품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작업 또는 하역, 분류, 포장, 재포장 등 선적 준비작업
직접운송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만 원산지로 인정하며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 가공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음
역외가공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반제품을 만든 후, 재반입하여 자국에서 최종 생산한 물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가격을 자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금액에 포함하는 제도
부속품 및 포장용품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등은 해당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 -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용품 및 포장용구는 그 내용물의 원산지를 따르지만, 관세율 표상 포장용품과 내용물을 별개의 품목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미적용

자료 :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5.

완전생산기준은 주로 농수산물에 적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주로 공산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매우 느슨한 형태(6단위 세번변경)에서부터 아주 까다로운 기준(2단위 세번변경과 60% 부가가치기준을 조합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내경쟁력이 취약한 개방에 민감한 산업물품의 경우 2단위 또는 4단위의 위주의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사용하는 데 비하여 수출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의 경우 6단위 변경기준을 사용한다.⁸⁾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으로는 크게 PANEURO⁹⁾와 NAFTA 모델¹⁰⁾로 나

8) 정인교, 전계서, p.235.

9) 동 모델에 대해서는 Cadot, Olivier,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누어져 있는데, 두 모델 모두 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입방지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원산지규정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정해 왔다. 아시아의 경우 고유한 모델이 없어 PANEURO와 NAFTA 모델이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¹¹⁾ 특히 NAFTA 모델의 경우 엄격하면서도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현재 우리나라의 체결 및 발효된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고, <표 3>과 같이 다양한 실질변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3〉 특혜관세 원산지 결정기준

관세율(code)	특혜관세명	원산지기준
Y1	한·칠레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 집적법 30%, 공제법 45%
Z1	한·싱가포르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FTA	한·아세안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 역내누적 부가가치 40%
FTE	한·EFTA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 재조원가 기준 외국산원재료가 50% 이하
	한·미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한·EU FTA	- 품목별 기준(HS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등)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절차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절차는 먼저 역외국 경유 여부를 검토한다. 순수 역내재료로 역내 가공시는 완전생산기준에 의해 역내산으로 결정한다. 역내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76-77. 참조

10) 동 모델에 대해서는 WTO,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2, pp.20-21. 참조

11) 김한성, 전계서, pp.36-37.

12) 원산지규정의 행정비용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 외 재료 혼용 또는 일부 역외 가공시는 실질변형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변형기준은 단순가공 여부를 검토하여 원재료별로 원산지를 확인한다.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역내산으로 결정한다. 원재료의 일부가 역외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품목별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¹³⁾

FTA협정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대부분 동일하나, 그 적용이 FTA별로 상이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원산지 확인기준

1) 원산지 증명방식

원산지 증명은 수출 전에 수출국가에서 FTA 특혜무역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증명주체에 따라 기관발급제와 자율발급제가 있다. 기관발급제는 수출국의 관세당국이나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수출자로부터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고, 자율발급제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5종 이상의 서류¹⁴⁾에 추가적으로 부품명세서나 제조공정도 같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근거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관세청에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위하여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¹⁵⁾,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¹⁶⁾를 운영하고 있다.

13) 김영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자동차 중간재 적용방안",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 442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8월, p.85.

14)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소명서 입증서류 등.

15) 한·아세안 FTA 발효에 맞춰 도입한 제도로써 원산지증명제도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효율적이며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정요건이 다소 엄격하고, 신청자격이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로 한정됨으로써 동 제도 이용기업이 많지 않았다.

16) 동 제도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

특히 한·EU FTA에서는 6,000유로 이상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인증수출자 지정이 일종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표 4〉 우리나라의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EU FTA
증명 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인증
증명 주체	수출자	한국:세관, 상공회의소 싱가포르:세관	수출자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아세안:각국의 권한 있는 정부 기관 ^{주)}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수출 검사위원회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
증명 방법	양국간 통일증명 서식	양국간 개별 증명서식	인보이스 신고방식	협정상 규정된 AK 양식	양국간 통일 증명서식	정형화 된 양식 없음	인보이스 신고방식
유효 기간	2년	1년	1년	6개월	1년	4년	1년

주: 아세안 각 국의 원산지 증명기관으로는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라오스(상무부),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 베트남(통상부) 등임

자료: 각 협정문

2) 원산지 검증방식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수입된 상품의 특혜 원산지규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국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 및 제한적 간접검증 등이 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것이며, 간접검증은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검증을 위탁하며, 제한적 간접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절충된 방식이다.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며 원산지 증명 등 원산지 관리를 업체 자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에 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비용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검증은 FTA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간내 원산지의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어 그 동안 받았던 특혜가 박탈된다.

최근 들어 원산지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EU 등과의 FTA 발효가 가시화되면서 FTA가 실질적으로 발효되었을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산지 검증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¹⁷⁾

〈표 5〉 우리나라의 FTA별 원산지 검증방식

구분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한·EU FTA
검증 방식	직접검증	직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先 간접검증 後 직접검증	직접검증 (섬유·의류 간접검증)	제한적 간접검증
검증 주체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	수출국 세관(수입국 세관 직원참여)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수입국 세관	간접: 수출국 세관 직접: 수입국 세관	수입국 세관(섬유· 의류는 수출 국 세관)	수출국세관 (수입국세관 직원참여)
회신기간	-	-	10개월	2개월	3개월	12개월	10개월

자료: 각 협정문

Ⅲ.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

향후 FTA 협정 체결이 확대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나 개별 협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원산지 심사 등으로 사후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 등이

17) 안재진,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1호,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2008, p.64.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듯이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원산지규정 위반사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FTA 추정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FTA 발효국가가 16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원산지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표 6〉 특혜관세 위반사유 및 추정실적

(건, 백만원)

위반 유형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0	0	90	6,256	171	11,561
세율 적용 오류	364	927	622	1,413	307	2,464
직접운송요건 위반	39	251	17	45	7	250
증명서류요건 위반	96	453	177	812	67	169
기 타	319	324	65	280	55	318
소 계	818	1,955	971	8,806	607	14,762

자료 : 관세청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기(既)체결한 FTA 협정하에서 발생한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판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판정사례

1) 한·EFTA FTA : 금괴 사례

한·E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이후 스위스 세관당국과 공조해 원산지를 위반한 1,800억대 스위스산 금괴를 적발하였다.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한 결과 스위스 내 금괴생산자가 수출 금괴와 동일한 품목번호의 재료를 사용하여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 동 사례는 남아공 등 제3국에서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하여 고순도화 공정(정련)을 거쳐 금괴를 생산한 후 이를 한국으로 수출한 것이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금괴 9톤, 수입신고 금액 1,793억 원을 파악해 7개 업체에 탈루

한 관세(부가가치세 포함) 약 59억 원을 부과했다.¹⁸⁾

한·EFTA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르면, 금괴(품목분류번호 7108.12)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다른 비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금괴를 생산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고, 만일 금괴와 품목분류번호 6단위가 동일한 비원산지 저순도 금괴를 스위스로 수입한 후 순도만 높은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불인정하고 있다.

2) 한·미 FTA : 골프공 사례

한국산 골프공 내부코어(core)를 미국에서 완제품인 골프공으로 제조하는 경우, 완제품을 제조·가공한 최종 국가인 미국에서 골프공의 원산지를 결정할 만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례로서, 판정결과 골프공은 내부코어공정과 우레탄커버공정이 있는데, 내부코어공정이 주요공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미국에서의 완제품 제조공정은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공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골프공의 원산지는 한국산이다.¹⁹⁾

3) 사례의 분석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실질적 변형)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하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원산지가 미부여된다.

2. 세율적용 오류 판정사례

1) 한·아세안 FTA : 조제새우 사례

A수입업체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베트남으로부터 1억 5백만 원 상당의 초밥용 익힌 새우를 스티로폴 접시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수입하면서 협정관세 0%를 적용하였는데, 조제새우는 밀폐용기에 포장한 경우에

18) 관세청, “1,800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2008. 8.

19) 관세청 특수통관과-958(10.3.15)호. 동 사례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에 따라 사전에 원산지 기준 위반 여부를 알아본 것이다.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나, 당해 스티로폴 포장은 밀폐용기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세율(20%)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 4백만 원을 추징당하였다.²⁰⁾

2) 한·EFTA FTA : 선박용 기계부품 사례

노르웨이에서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A기계는 수입신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노르웨이 산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지 않아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기본세율로 통관하고, 2주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자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FTA 특혜대상 물품인 경우 법령상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특혜세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²¹⁾

3) 사례의 분석

특정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이 다르다. 또한 협정관세 대상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만약 신고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B라고 체크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동일한 품목이라도 각 FTA에서 정하는 특혜관세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의 경우 칠레산은 관세율이 0%, 싱가포르산은 4%, EFTA산은 5%, 아세안산은 0%이다.

3. 직접운송요건 위반 판정사례

1) 한·칠레 FTA : 와인 프랑스 경유 사례

칠레산 와인이 우리나라에 수출됨에 있어 프랑스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20) 관세청, “FTA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 사례 많아 -기업들 FTA 활용도 높이는데 관심 기울여야-”, 2008. 10. (www.customs.go.kr.)

21) 관세청, “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및 유의사항”, 2006. 10.

도착되었으나, 경유국인 프랑스에서 환적될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2) 한·EFTA FTA : 현미경 부분품 일본 경유 사례

본사가 스위스인 다국적기업의 일본 대리점이 일본에서 수입통관된 현미경 부분품을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면서, 한·E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신청하였으나 직접운송원칙 위반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²²⁾ 동 사례의 경우, 제3국에 판매하였던 물품을 우리나라에 재수출을 하였기 때문이다.

3) 사례의 분석

직접운송원칙은 특혜수혜국(수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 공여국(수입국)으로 운송될 때, 제3국 경유 없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지리적인 이유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것도 허용된다. 이 경우 상품이 세관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사설창고에 보관되어 판매, 교역, 소비에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적에 필요한 또는 상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단순작업 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지 않아야 한다.

4. 증명서류 요건 위반 판정사례

1) 한·싱가포르 FTA : 합성수지 사례

싱가포르에서 합성수지를 수입하는 P업체는 수출자로부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FTA 발효이전부터 관행적으로 받고 있었다. 한·싱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기존 관행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신청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으나, 한·싱 FTA 원산지규정에 의한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어서 관세를 추징당하였다.²³⁾

22)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23) 관세청, 전개자료, 2006. 10.

2) 한·칠레 FTA :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 사례

수입업체 B주식회사는 2004년 5월과 8월에 칠레로부터 아크릴섬유 제조용 촉매(몰리브덴산염) 3억 7천만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급하여야 하나, 일본의 중계인이 발급한 것을 제출하여 특혜관세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원산지 증명서류 요건위반으로 일반세율(5.5%)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2천 6백만 원을 추징당하였다.²⁴⁾

3) 한·EFTA FTA : 금괴 사례

수입업체 C주식회사는 스위스로부터 금괴 950kg을 7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0%를 적용하였는데, 위반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해 대구세관과 서울세관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스위스 세관당국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금괴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별 재료내역 등)를 제출하지 않자, 자국 수출자가 협정을 위반하였음을 회신하여 왔는데 이는 원산지 입증서류 미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7억 7천만 원을 추징당하였다.²⁵⁾

4) 사례의 분석

원산지증명서는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로서 각 협정별로 서식 및 기재방법이 상이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이 없는 중계인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표 4>에서 보듯이 협정별로 상이한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5. 협정관세 적용대상 미확인 판정사례

1) 한·칠레 FTA : 냉동 홍어 사례

24) 관세청, 전계자료, 2008. 10.

25) 상계자료.

칠레부터 냉동 홍어를 수입하는 C수산은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알고 조정관세로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칠레산 홍어는 조정관세보다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으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조정관세 27%, 한-칠레FTA 협정관세 25.4%).

2) 한·EFTA FTA : 스노보드 사례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S업체는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스위스산 스노보드를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기본세율 8%, 한-EFTA FTA 협정관세 0%).²⁶⁾

3) 사례의 분석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발효된 FTA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해당 품목이 협정관세 대상품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서 보듯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이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아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V. 위반 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무역업계에 대한 시사점

1.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이 낮아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²⁷⁾ 전체 응답업체의 80%

26) 관세청, 전계자료, 2006. 10.

이상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활용률이 16.3%에 그쳤다.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응답내용은 <표 7> 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응답 내용	사례 수
이미 무관세이거나 전체적으로 큰 실익이 없다	160
FTA 체결상황이나 활용방법(관세, 원산지정보 등)을 잘 모름	153
원산지증명에 대한 상대국 바이어 요청이 없다	65
FTA 활용을 위한 서류 구비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다	47
당사와 거래 없음	45
기타	25

주요 응답내용 중 FTA 활용방법(관세, 원산지정보)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FTA 활용을 위한 서류 구비 등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과다는 그 만큼 기업 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례분석에서 보듯이,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협정관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에 대한 중요성과 그 활용방법에 대한 대(對) 기업홍보와 더불어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배포와 담당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FTA 특혜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첫째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의 여부 확인, 둘째 각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이의 충족요건 확인, 셋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주체는 어디인지의 확인, 넷째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의 확인 등과 같은 세부사항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7)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제고방안”, 2008. (www.kita.net)

2.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존에 체결된 개별 FTA의 원산지규정을 통일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산지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의 혼란을 제거하고 FTA 혜택을 향유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과 국가의 신뢰도 및 경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²⁸⁾

이러한 관점에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 및 분석²⁹⁾,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³⁰⁾규정에 따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설립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동 정보원은 정부기관과 기업들에게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하여 국익보호와 수출입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

현재 각 국가의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할 경우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제재조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국제조약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처벌유형 및 처벌수준 등은 각 계약당사국의 국내 법률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³¹⁾

특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세관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 또는 실사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1991년 혼다자동차는 캐나다산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1,700만 달러의 관세를 추징당했으며, 2001년 미국 포드차는 멕시코산 부품의 원산지 미입증으로 4,100만 달러, 2006년 파이오니어사는 멕시코산 스피커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 등으로 3,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3.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판정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 개별 FTA 협정내용을 충분히

28) 안재진, 전계논문, p.68.

29) 관세법 제233조 2항.

30)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5항.

31) 김석오, “FTA 원산지규정 벌칙 및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좌담회, 2008 ; 주요국의 처벌 법규에 대해서는 김한성, 전계서, pp. 41-49 참조.

히 이해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오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들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무역업체가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 제도는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FTA관세특례법³²⁾”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³³⁾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 등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이 자국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자국의 수입자나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의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심사결과는 경우에 따라 변경·철회가 가능한데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는 사실착오, 판정이 기초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의 변경, 사법 또는 행정 결정 또는 국내법상의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하며, 한·미 FTA는 판정이 부정확한 정보 및 허위정보에 기하였던 경우에만 가능하다.³⁴⁾

4. 무역계약서에 원산지규정 명시

증명서류 요건 위반의 금과 사례에서 보듯이 스위스산 수입금과에 대해 원산지 불인정이 발생하면서 결국 수입업체 C주식회사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수출자와 무역계약체결시 “세관의 검증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모든 손해를 수출자가 배상하도록 한다”하는 클레임 조건과 원산지 사후 검

32) 동 법률은 우리나라가 체결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결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p.385.

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34) 김한성, 전게서, pp.121-122.

증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해야한다.

향후 FTA 체결 국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협정 상대국들과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원산지 검증시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오류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 최종생산자(수출자)와 원재료 공급자 간 구매계약서 작성시에도 원산지 오류로 인한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해야한다. 최종생산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 부분 원재료 공급자들의 협조의무가 필요하며, 원재료 공급자의 잘못된 원산지 판정으로 인해 최종생산자가 원산지 판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⁵⁾ 따라서 국내 공급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상의무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원산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이미 발효된 FTA 이외에도 향후 다수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상황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출업체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전문 부서나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는 더욱 없는 실정이다.

각 지역의 세관,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정도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문의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증가하는 FTA하에서 이들 기관들이 원산지기준 및 증명절차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고충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샌들러 앤 트래비스(Sandler & Travis Trade Advisory Services, INC)³⁶⁾,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트레이닝(International Business

35)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09, p.103. ; 이종규 외,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10, p.28.

36) 관세 및 무역권설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로서 정부서비스, 상업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FTA 관련 주요 업무로 주요 고객사(GM, 크라이슬러, 현대차 등)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공급자들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조자증명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raining)과 같은 민간기관이나 중부 뉴욕 생산자조합(MANCY: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entral New York)과 같은 협회, 브래들리 대학(Bradley University)과 같은 교육기관 등에서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³⁷⁾

우리나라도 다수의 국가와 FTA가 체결 및 발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발효 전보다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기관, 협회,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 업무는 무역실무, 어학능력을 비롯하여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등 많은 분야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6.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의 확립

FTA별로 통일성 없이 협정 상대국과의 교역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규정이 사용될 경우 국내 생산자와 수출자 입장에서 FTA의 이용 동기가 약화 될 수 있으므로 유럽(PANEURO 모델)이나 북미국가(NAFTA 모델)처럼 독자적인 원산지규정 방식이 필요하다.

김한성 외(2008)의 연구에서 보듯이 한국 주요 수출품목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통일성 부족은 기업의 입장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의 FTA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른 원산지 증명을 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FTA별로 다른 원자재 조달 및 생산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은 크게 역내무역활성화와 역외경제권으로의 개방화조치를 고려하여 만들 필요가 있으며,³⁸⁾ 이를 통해 향후 FTA 협상 진행 중인 국가(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등)와 검토 중인 국가(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등)를 포함하여 전세계 많은 나라와 FTA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원산

37) 김한성, 전계서, pp.183-184.

38) 방호경, 전계자료, p.5.

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현재 전세계적으로 FTA를 포함하여 450건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272건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전략은 주로 특정 권역과 FTA를 체결하여 이를 발판으로 주요 시장권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FTA는 일종의 특혜의 시작이자 규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FTA의 원산지규정을 잘 활용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거나 잘못 판정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결국 급증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 및 검증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 원산지규정의 주요 판정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직접운송요건 위반, 세율적용 오류, 증명서류 요건 위반, 협정관세 적용대상 미확인 등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판정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으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활용, 무역계약서에 원산지 규정 명시, 원산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독자적인 원산지규정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문헌연구와 국내의 주요 판정사례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국외의 사례를 함께 비교·분석하거나 실증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진석,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9권 제4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6.
- 고용부,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통상법률」, 통권 제71호, 법무부, 2006.
- 김석오, “FTA 원산지규정 별칙 및 법규 입법사례 비교”, KIEP 전문가 좌담회, 2008.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 김연숙, “한·중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 김영춘,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자동차 중간재 적용방안”, 「관세와 무역」, 제39권 제442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한성 외,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창봉·박주원, “원산지증명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 남풍우·최준호,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노덕률, “한국 FTA 특혜관세 활용에 있어 스파게티보울(Spaghetti bowl) 현상의 결정요인”, 「관세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0.
- 박광서 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별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 안병수,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JSEPA)의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안웅린, “EU의 FTA 원산지규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8권 제2

- 호, 한국관세학회, 2007.
- 안재진, “FTA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중요성과 원산지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34권 제1호, 경희대 사회과학 연구원, 2008.
-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두남, 2009.
- 이종규 외, “한-EU FTA와 기업의 대응전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이제현·김기영, “한·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3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이제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 정인교 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 정인교, 「FTA 통상론」, 을곡출판사, 2010.
- 조미진 외,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조정란, “한미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내용과 경제효과 추정 -NAFTA 특혜 관세 이용률 활용-”,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8.
- 지식경제부·한국무역협회, 「FTA 원산지 길라잡이」, 2009.
- 최문·이상빈, “중국의 기체결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권 제2호, 현대중국학회, 2009.
- 최준호,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최홍식·류원택, 「원산지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4.
- 한국무역협회, “기업의 FTA 활용현황과 제고방안”, 2008.
- 관세청, “FTA 등 특혜관세 적용 오류 및 유의사항”, 2006. 10
- 관세청, “1,800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2008. 8.
- 관세청, “FTA 특혜관세 혜택 못 받는 사례 많아 -기업들 FTA 활용도 높이는 데 관심 기울여야-”, 2008. 10.

- Baldwin Richard, "Multilateralising Regionalism: Spaghetti Bowls as Building Blocs on the Path to Global Free Trad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12545, NBER, 2006.
- Bhagwati, J., *Termites in the Trading System: How Preferential Agreements Undermine Free Trad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Cadot, Olivier, *The Origins of Goods: Rules of Origin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Carrere, Celine and Jaime de Melo, A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Any Gains for the South, *Presentation at the Third Workshop of the Regional Inegration Network*, Uruguay, December 15–18, 2003.
- Estevadeordal, Antoni, Jeremy Haris and Kati Suominen, *Multilateralizing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ound the World*, WTO, 2007.
- Estevadeordal, Antoni, Kati Suominen and Robert Teh, *Regional Rule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OECD,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Rules of Origin*, 2002.
- Schott, Jeffrey, *Free Trade Agreements: US Strategies and Prioriti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4.
- WTO, *Rules of Origin Regim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 2002.

ABSTRACT

The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n the Breach of Rules of Origin in FTAs

Lee, Young Soo
Kwon, Soon Koog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Key Words : Rules of Origin,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Proof of Origin, Verification of Origin
--